

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설명회 개최

특허청과 본회는 11월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.

중소기업인과 발명가 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공부 창업지원과 김경원 사무관, 특허청 지도과 김종득 사무관, 한국기술투자(주) 장동주 이사

등이 강사로 나서 ▲정부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 ▲창업조달기관 (한국기술투자(주)) 업무 ▲특허기술보유 중소기업자에 대한 무담보 자금지원방안 ▲특허기술사업화제품의 시험분석지원 및 기술신용지원방안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이 있었다.

이날 특허청이 발표한 「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안내」의 내용을 소개한다.

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안내

1. 지원목적

우수한 특허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 의욕고취 및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여 우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.

2. 지원내용 및 절차

가. 자금지원

○지원대상 : 특허, 실용신안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(신청일 현재 존속중인 권리의 원보유자와 그 승계인 및 실시권을 하여 받은 자)

○지원자금 :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의 창업 조성자금 중 일정책('91년 50억원)을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자금으로 별도 배정된 자금

○지원조건

구분	지원액	지원조건
시설자금	3억원 이내(소요자금의 90% 이내)	8년(3년 거치) 연리 9%
운전자금	1억원 이내(1회전 소요자금의 70% 이내)	3년(1년 거치) 연리 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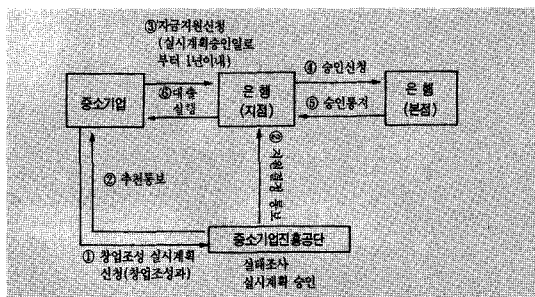
○취급기관

-대상업체 선정 : 중소기업진흥공단(창업 조성과)

-용자취급 은행 : 중소기업은행,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, 기타 지방은행, 농협중앙회

○관련규정 : 중소기업진흥법 제11조 창업 조성 지원사업 추진요령

○지원절차



○구비서류

- 창업조성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(소정양식)
-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
- 신기술보유 관계 증빙서류(특허,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)

이달의 焦點

- 사업자 등록증(기설립된 경우)
-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(법인의 경우)

※ 문의처 :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조성과
(☎ 783-9611)

나. 기술성 평가 지원 및 보증추천 지원

○지원대상

- 특히, 실용신안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로서
- 산업은행 등 기술개발 관련 자금취급 은행의 용자를 원하는자 중 물적 담보 능력이 없는 자

○취급기관

-보증추천대상 선정 : 특허청(한국발명 특허협회)

-보증지원 : 기술신용보증기금

-용자 취급은행 : 산업은행, 서울신탁은행, 중소기업은행 등 기술개발 관련 자금취급 금융기관

○관련규정 : 중소기업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방안('91. 1. 15. 특허청)

○부대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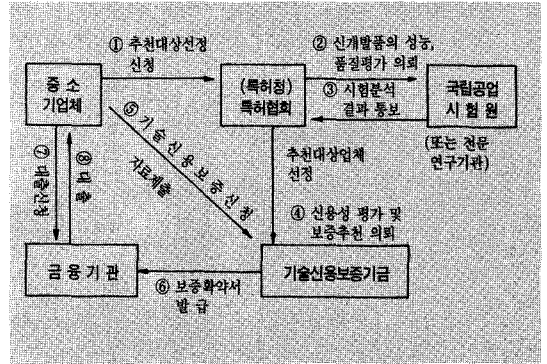
-보증추천대상 선정시 필요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국립공업시험원 및 분야별 전문 공공 연구기관(KIST, 대학부설연 등)을 통해 무료시험분석 실시

-선정심의위원회 구성, 추천대상 최종 선정

- 분야별 전문 연구위원
- 분야별 대학교수
- 분야별 담당 심사관

- 기술신용보증기금, 창업투자사 등 사업성 평가 기관

○지원절차



○신청서 구비서류

- 재무제표
- 금융거래 확인서
- 부가세 공급가액 증명원
- 부동산 등기부등본(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)
-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기업에 한함)
- 기업실태표
- 기술사업계획서(해당기업에 한함)
-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(해당기업에 한함)
- 신기술 보유관계 증빙서류(특히,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, 등록공고 사본)

※ 문의처 :

① 기업정보센터(한국발명특허협회내, ☎ 551-5571)

② 특허청 지도과(☎ 568-6073)

案

發明特許資料 판매센터

內

本會는 發明特許 관계 資料 판매센터를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韓國綜合展示場(KOEX)別館 2층 發明獎勵館內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많은 活用바랍니다.

문의전화 : (서울) 551-5571~2